# 2023년도 국 정 감 사 계 획 서

2023. 9.

국회운영위원회

## 목 차

1.	감사의 목적1
2.	감사기간1
3.	감사대상기관(총 9개 기관)1
4.	감사반의 편성2
5.	감사일정 및 감사장소4
6.	감사요령5
	가. 주요감사사항5
	나. 감사방법5
	다. 감사진행순서5
	라. 감사의 공개5
7.	보고 및 서류제출요구6
	가. 업무현황보고 요구6
	나. 서류제출 요구6
8.	증인·참고인 등의 출석요구7
9.	선서요령7
10	.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7

##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

## 1. 감사의 목적

■「헌법」제61조,「국회법」제127조 및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국정현안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 등에 반영하고, 위법・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## 2. 감사기간

■ 2023. 11. 7.(화) / 11. 8.(수) [2일간]

## 3. 감사대상기관(총 9개 기관)

위원회선	정 대상기관	본회의승인 대상기관	
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호 해당 국가기관	1. 국회사무처 2. 국회도서관 3. 국회예산정책처 4. 국회입법조사처 5. 대통령비서실 6. 국가안보실 7. 대통령경호처 8. 국가인권위원회	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4호 해당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	국회미래연구원
계	8개	계	1개

## 4. 감사반의 편성

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(28인)으로 단일 감사반 편성

#### ■ 감사반

구 분	교섭단체 또는 정당	위 원 명	비고
감사반장	국민의힘	윤 재 옥	위원장
감사위원	더불어민주당	온 헌 인 주 배 덕 용 형 주 병 훈 우 민 국 민 하광 기 영 병 영 병 동 기 정 준 병 용 철 성 정 운박 송 고 김 김 민 서 오 유 윤 이 이 장 홍 홍 황	간 사
	국민의힘	수 식 헌 수 숙 선 혁 혜 희 희양 영 종 범 정 인 동 주 경 명 명 저 서 이 장 전 정 조	간 사
	정의당	배 진 교	

※ 위원 개선 시 국회운영위원회에 보임된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함.

구 분	직 위	성 명	비고
감사보조자	유 원 원 관 전 전 원 의 관 장 생 의 운 영 조 사 관 관 성 의 운 영 조 사 관 관 회 의 운 영 조 사 관 행 국 회 의 운 영 조 사 관 작 회 의 운 영 조 자 가 관 학 후 후 두 두 두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	하 묵 성 만 근 혜 해 언 아 영 명 숙박 김 구 서 조 김 박 이 최 박 장 문	
	속 기 사	이현아 외	
		정 경 수	더불어민주당
	저태어그이의	홍 지 숙	더불어민주당
	정 책 연 구 위 원	김 민	국민의힘
		박 현 정	국민의힘

## 5.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

일	Л	대 상 기 관	감 사 장 소
2023. 11. 7.(화)	10:00	<ol> <li>대통령비서실</li> <li>국가안보실</li> <li>대통령경호처</li> </ol>	국회운영위원회 회 의 실 (본관 319호실)
	10:00	1. 국가인권위원회	
2023. 11. 8.(수)	14:00	1. 국회사무처 2. 국회도서관 3. 국회예산정책처 4. 국회입법조사처 5. 국회미래연구원	국회운영위원회 회 의 실 (본관 319호실)

<sup>※</sup> 감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.

### 6. 감사요령

#### 가. 주요감사사항

- 조직·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
- 주요정책 및 업무추진 사항
-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
- 202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
- 각종 민원처리사항
- 그 밖에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

#### 나. 감사방법

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과 주요업무 또는 특정 현안 등에 관한 보고 청취, 질의·답변, 서류제출요구, 증인 등 출석 요구,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한 증언·진술의 청취와 신문, 그리고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함.

#### 다. 감사진행순서

- ① 감사선언(위원장)
- ② 위원장 인사
- ③ 증인선서
- ④ 감사대상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
- ⑤ 업무현황보고 청취
- ⑥ 질의 및 답변(증인 신문 및 증언)
- ⑦ 감사 종료 선언(위원장)

#### 라. 감사의 공개

■ 감사는 공개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함.

### 7.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

#### 가. 업무현황보고 요구

■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국정감사일에 업무현황을 보고하도록 함.

#### 나. 서류제출 요구

-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원회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서류와 위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.
  - (1) 일반현황(조직, 인원, 예산, 설비 또는 시설)
  - (2) 2023년도 조직·인사 변동사항
  - (3)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현황
  - (4)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
  - (5) 2024년도 예산안 개요
  - (6) 2022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
  - (7) 최근 2년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
  - (8) 2023년도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·개정 및 폐지 현황
  - (9) 2023년도 민원처리 현황
  - (10) 그 밖에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
- 서류제출 요구서는 서류제출 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함.

### 8. 증인·참고인 등의 출석요구

-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 기관증인과 일반증인·참고인 등의 출석요구는 위원회 의결로 함.
- 의결 이후 기관증인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인사 등으로 변경되거나 의결 시 공석인 직위에 신규로 보임된 경우 해당 직위에 새로 보임된 사람을 기관증인으로 함.
- 증인·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도록 함.

## 9. 선서요령

- 증인은 선서를 실시하고, 위원장은 기립하여 선서를 받음.
-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, 대표자(기관장 등)가 선서서를 낭독하고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·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.
- 위원장은 선서 전에 선서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증인에게 설명 하여야 함.

## 10.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

-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함.
-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·기간·대상기관·실시경과 등 일반 사항과 주요감사실시내용,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, 건의사항,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 등을 포함하도록 함.
-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(안)을 전체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회 의결로 채택함.